

규정류(제정·개정)입안서

1. 규정류명 : 대학 입학전형 회피·배제 제도 운영 규정
2. 규정류(제정·개정)사유 : 전문대학 입학전형 회피·배제 가이드라인 안내 권고사항
3. 주요내용 :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과 관련있는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회피·배제 실시
4. 시행예정 또는 요청일 : 공포일로 부터
5. 참고사항
 - 가. 관련규정: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운영 규정
 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 - 다. 관련부서: 해당없음
6. 첨부사항: 규정류(제정·개정)안 전문 1부.

2026년 3월 31일

소관부서 : 입학처장 선 일 석

(인)

관련부서 :

(인)

대학 입학전형 회피·배제 제도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·투명성·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, 입학전형 업무참여자의 회피 및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입학전형”이란 본교의 신입생 및 편입생 선발의 평가 절차로 고등교육법 제34조의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말한다.
2. “입학전형 업무참여자”란 서류평가, 면접평가, 실기평가 등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교원 및 입학사정관을 포함한 대학 입학사정 업무 관련자 등을 말한다.
3. “회피”란 응시생과 특수 관계를 가진 자가 입학전형 업무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자진신고 등 스스로 참여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배제”란 대학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특정 대상자를 입학전형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.
5. “이해충돌”이란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개인적·직접적·간접적 이해관계를 말한다.
6. “응시생과 특수 관계”란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와 본 규정의 제3조에서 정하는 응시생과의 관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입학전형 회피 및 배제 대상 적용범위는 출제, 평가, 감독, 관리, 사정 등에서 관여하는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로 한다.

② 회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과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)에 있는 경우
2. 교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
3. 교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「고등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
4. 기타 선발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③ 배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(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, 배우자)인 경우
2. 회피 자진신고를 받은 내용 중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4조(회피·배제 제도 운영) ① 입학 담당부서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실시 전 회피·배제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

②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생과 특수 관계를 가진 교직원은 본교 입학 담당부서에 회피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입학 담당부서는 교직원 및 입학전형 관련하여 위촉되는 외부인에게 서약서 등을 작성토록하여 회피·배제 관계 여부를 재확인하고 해당인이 입학전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입학 담당부서는 자진신고 자료와 시스템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회피·배제 결과를 보고한다.

⑤ 입학 담당부서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인사현황자료, 장학금 신청내역 조회,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한다.

제5조(처리관리) ① 입학전형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는 평가 및 운영 등의 입학전형 업무에서 제외한다.

② 입학전형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경우 입학전형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③ 입학 담당부서는 매 학년도의 회피·배제 운영 결과를 자체 보관관리하여 입학전형 관리의 공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한다.

④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장은 교직원이 지원자의 합격에 부정하게 기여하거나 회피·배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,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자에 대한

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른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